

母子家口の 生活問題와 福祉接近

曹 愛 姐

母子家口는 配偶者와의 死別, 離婚 및 別居 등으로 홀로 된 母가 未婚子女와 함께 사는 家口를 말한다. 이들 家口의 形成은 전통사회에서는 男便의 死亡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 이를수록 離婚 및 別居에 의한 경우가 증가하고, 또 核家族化와 함께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生計를 책임지던 남편이 없다는 점에서 經濟的 貧困은 물론 役割의 過重 및 情緒的 葛藤 등 많은 問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가구중 低所得層을 대상으로 生計保護 내지 子女의 養育 및 教育費 支援 등 다양한 福祉策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物質的 측면에 국한된 것으로 役割補完이나 情緒安定을 위한 측면은 未洽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母子家口의 生活問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役割支援과 情緒安定을 위한 接近方案을 摸索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이들 가구를 위한 지원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이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들 家口의 役割支援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社會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제공되는 在家福祉서비스를 活性化 하고, 그 對象도 모자가구까지 擴大하도록 하며, 둘째, 情緒的 支援을 위한 綜合 相談窓口를 設置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地域사회내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綜合)社會福祉館을 綜合 相談窓口로 하고, 셋째, 모자가구간의 自助그룹을 形成하여 상호 社會的·情緒的 支持者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모자가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豫防的 次元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결혼의 안정성에 관한 婚前教育 및 민간기관을 통한 夫婦教育의 實施 등이 요구된다.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原稿를 검토하여 주신 孔世權 研究委員·韓惠卿 責任研究員께 감사드립니다.

I. 問題提起

偏父母는 결혼한 부부가 配偶者의 死亡이나 離婚 및 別居 등으로 어느 한쪽 또는 각각이 미혼인 자녀와 같이 사는 偏父 또는 偏母의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대상은 1966년 인구 센서스에서 全國적으로 약 39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에 이룰수록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解婚構造의 變化로 偏父母 家口는 1970년에 59만가구로, 1980년은 74만가구로 증가하면서 1990년은 89만가구에 이르며, 이중 母子家口가 약 3/4(7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룰수록 母子家口가 增加하는 理由는 무엇이며, 또 이들 가구는 有配偶家口에 비해서 어떠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傳統社會에서 편부모의 形成은 엄격한 가족제도에 의해 이혼이 통제되고, 생존조건인 열악으로 높은 사망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로 남편의 死亡에 의한 것으로, 이들은 大家族制度로 포용되면서 社會적으로 露出되지 않았다. 그러나 現代社會는 生存條件의 改善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 대신 각종 事故¹⁾나 災害로 인한 사망과 이혼 및 별거의 증가²⁾로 나타나고, 이들은 核家族化의 性向에서 편부모도 獨立된 가구를 이루는 사회적 노출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産業化와 함께 離婚 및 別居는 왜 增加하고 있을까? 이혼 및 별거가 부부간의 葛藤에 의한 것이라면 산업화는 부부관계에 어떠한

1) 최근 統計廳 資料(1993)에 의하면 각종 事故로 인한 사망자는 年間 32,000여명 수준에 이르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약 3/4(74.3%)은 男子이며, 이들 중 25~64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율은 66.3%로 이들 대부분이 家計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은 母子家口 形成에 主要 原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統計廳, 『1992年 死亡原因 統計年報』, 1993:62).

2) 死別은 부부중 어느 한 쪽만이 偏父나 偏母로 남지만 離婚 및 別居는 부부양쪽이 모두 偏父母로 남게 됨에 따른 것이다.

영향을 주었고,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산업화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은 家族中心 生産體制가 企業化되면서 가정과 일터의 분리, 부부간 役割의 分擔은 물론 함께 지내는 시간을 단축시킨 점이며, 다음은 산업화와 병행된 출산조절, 교육확대 및 취업증가 등이 여성들에게 自我意識 내지 平等意識을 고취시킨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家父長制에 따른 女必從夫라는 從屬關係를 애정중심의 平等關係로 바뀌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나, 그러한 평등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혼이나 별거를 증가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통계에서 離婚이 年間 50,960건(統計廳, 1995)에 이르고, 이는 대개 부부갈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이혼 및 별거의 증가는 결국 그 결과가 편부모로 귀결되고 있지만 偏父는 再婚率이 높은 반면, 偏母는 그렇지 못한 가운데 母子家口는 급속히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모자가구의 生活問題는 유배우가구와 달리 家計를 책임지던 남편이 없다는 점에서 經濟的 貧困은 물론 役割過重, 子女養育 그리고 情緒的 葛藤 등 다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孔世權 外, 1995). 이는 가족생활이 성원의 협력과 유대로 이루어지는 構造, 機能 및 價値의 複合的 共同體라는 점에서 남편이 맡아왔던 역할까지 부인이 겸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가구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보호 내지 학비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역할보완 내지 정서안정을 위한 접근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모자가구의 形成原因, 生活問題 등을 검토하여 모자가구의 役割補完 및 情緒安定을 위한 接近方案을 摸索하는데 焦點을 두었다.

II. 接近方法

特定 問題를 接近함에 있어서 문제의 原因과 屬性 및 문제를 바라보

는 視覺에 따라 그 解決策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자료를 토대로 모자가구의 形成原因과 生活問題를 검토하여 향후 이들 가구를 위한 福祉接近은 어떤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摸索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자가구는 이제까지 대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制限的이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자가구의 經濟貧困을 중시하면서 生計問題 내지 子女問題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이들 가구의 문제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役割過重이나 情緒問題에 관한 연구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보호 및 교육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문제 및 정서문제를 위한 接近方案을 摸索하는데 焦點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용된 자료는 缺損家族의 生活實態調査(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資料³⁾와 일부 관련문헌 등이다.

Ⅲ. 形成原因

母子家口の 形成은 배우자의 사망과 부부간의 이혼 및 별거 등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解婚類型은 최근에 이를수록 사망구조의 개선으로 인한 死別率의 統制와 함께 個人主義 性向에 따라 離婚 및 別居는 증가하고 있다⁴⁾.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결손가족의 생활

3) 『缺損家族의 生活實態調査』는 전국에서 標本抽出한 약 20,000家口를 대상으로 실시한 面接調査로써, 가구조사 실시결과 결손가구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 缺損原因 및 生活實態에 관한 追跡調査를 실시한 것이다.

4) 年度別 離婚率(結婚數에 대한 離婚數)의 變化를 살펴보면 1960년에 3.2이던 것이 1970년에는 4.3으로, 1980년에는 5.8, 1990년에는 10.8로, 그리고 1993년에는 15.2로 증가함으로써 최근에 이를수록 急激한 變化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統計廳, 『人口動態統計年報』, 1989, 1994; 김순옥, 「대안으로서의 이혼」, 『가족과 혼인문화』, 한국가족학회·한국학술진흥재단, 1996:57).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완료된 모자가구는 641가구로써(도시: 465가구, 농촌: 176가구) 이들 모자가구의 形成原因은 死別이 76%, 離婚 13%, 別居 11%로 아직까지 사별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1984년 韓國女性開發院이 실시한 조사결과(이혼 및 별거 9.7%)와 비교할 때 이혼 및 별거에 의한 경우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金貞子 外, 1984:31). 물론 이러한 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모자가구로 남겨진 대상을 표본으로 한 것으로 解婚後 死亡이나 再婚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動態統計(vital statistics)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表 1〉 地域別 母子家口 形成原因

(단위: %)

원인	전국	도시	농촌
사별	76.3	71.1	90.1
이혼	13.0	16.0	5.2
별거	10.7	12.9	4.7
전체	(629)	(457)	(172)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이들 가구의 形成原因을 解婚類型別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死別의 경우 病死가 61.4%, 事故死 27.8%, 其他는 10.8%이며, 離婚 및 別居는 배우자의 不貞·非行이 29.0%로 가장 높고, 다음은 性格差異(26.9%), 가정경제 문제(9.0%), 그리고 학대·폭력(8.9%) 및 부양기피(8.9%) 등이다.

모자가구의 形成時期는 결혼이 언제 解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23.0세에 결혼을 하여 평균 38.3세에 해혼이 이루어져 약 15년간의 결혼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解婚原因別로 보면 死別한 경우는 22.6세에 결혼을 하여 39.8세에 남편이 사망하여 17년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離婚의 경우는 24.3세에 결혼하여 33.7세에 헤어짐으로써 약 9.4년간의 결혼생활을, 또 別居의 경우는 24.7세에 결혼을 하여 33.2세에 별거를 함으로써 8.5년간의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해 볼때 死別의 경우는 30대 후반에, 離婚 및 別居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헤어짐으로써 해혼현상은 30대에 집약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表 2〉 死別 및 離婚·別居事由

(단위: %)

해혼원인	전국	도시	농촌
사별원인	(472)	(319)	(153)
병사	61.4	62.1	60.1
사고사	27.8	29.5	24.2
기타	10.8	8.5	15.7
이혼·별거사유	(145)	(128)	(17)
부정·비행	29.0	28.9	29.4
학대·폭력	8.3	8.6	5.9
부양기피	8.3	5.5	29.4
성격차이	26.9	28.1	17.6
가정불화	7.6	7.8	5.9
가정경제	9.0	10.2	-
기타	11.0	10.9	11.8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表 3〉 解婚原因別 結婚 및 解婚時期

결혼·해혼시기	전체	사별	이혼	별거
결혼연령(세)	23.0	22.6	24.3	24.7
해혼연령(세)	38.3	39.8	33.7	33.2
결혼기간(년)	15.3	17.2	9.4	8.5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이처럼 해혼이 30대에 이루어짐으로써 재혼을 희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편모중 再婚을 希望하는 경우는 14%로 사별인 경우보다 이혼·별거 등의 경우에 높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解婚原因別 再婚希望率은 사별인 경우 10.7%, 이혼인 경우 24.4%, 별거 등인 경우 20.0%로 離婚한 편모의 경우 재혼희망률이 가장 높다.

또한 年齡別로는 30대 이하는 25.4%, 40대는 12.8%, 50대 이상은 3.9%로 연령과 재혼희망률과는 反比例 현상을 보인다(孔世權 外, 1995:20~21).

〈表 4〉 再婚希望與否別 再婚안하거나 원치 않는 理由

(단위: %)

이유	전체	사별	이혼	별거
재혼희망	(79)	(47)	(19)	(13)
자녀문제	49.4	59.6	31.6	38.5
대상없음	32.9	19.1	63.2	38.5
기타	17.7	21.3	5.3	23.1
재혼비희망	(482)	(379)	(55)	(48)
자녀문제	66.5	67.8	61.8	64.6
대상없음	5.0	3.2	9.1	12.5
기타	28.5	29.0	29.1	22.9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손가족의 생활실태조사

그러나 재혼을 希望하는 편모의 경우도 자녀문제와 마땅한 상대가 없어 재혼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離婚한 편모의 경우 재혼을 希望하는 비율은 가장 높은 반면, 상대가 없다는 것이 재혼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理由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혼을 원치 않는 편모의 경우도 약 2/3 정도가 자녀 때문에 재혼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解婚原因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子女問題가 이들 再婚의 制約要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生活問題

대개의 편모는 생계책임자인 配偶者를 喪失함에 따른 경제적 빈곤과 父의 役割 喪失로 인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그리고 주변으로부터의 孤立과 疎外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즉, 편모는 배

우자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 허탈감과 함께 가계책임자로서의 부담, 자녀에 대한 의무감 등 身體的·心理的·情緒的 負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편모가 겪는 어려움은 生計問題, 役割過重 問題 및 情緒的 問題로 大別할 수 있다.

1. 一般特性

이들 모자가구는 배우자를 잃게 됨으로써 유배우가구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들 家口의 規模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同居家族員의 경우 有配偶家口는 3.84명인데 비해 모자가구는 2.95명으로 약 1명 정도가 적은 상태로써 이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全體 家口員의 경우도 각각 3.85명과 2.98명으로 동거가족원수와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동거인 등이 없이 가족원끼리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表 5〉 母子家口와 有配偶家口의 一般特性 比較

일반특성		모자가구	유배우가구
가구규모	동거가족원(명)	2.95	3.84
	가구원(명)	2.98	3.85
가구주 특성	평균 연령(세)	45.8	46.0
	초등학교 이하 학력(%)	54.2	20.6
	취업률(%)	77.4	90.9
	단순노무직 종사율(%)	32.5	19.0
생활수준	자가소유율(%)	47.7	58.6
	월평균 생활비(만원)	50.2	74.5
	생활자립률(%)	67.1	92.5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또한 이들 유배우가구와 모자가구의 家口主 特性을 보면 平均 年齡은 46세 정도의 비슷한 수준이나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

교한 教育水準의 경우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 유배우가구가 약 21%인데 비해 모자가구의 가구주는 약 54%로 과반수 이상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었다. 教育水準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한다 해도 모자가구의 교육수준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就業率의 경우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유배우가구: 91%, 모자가구: 77%), 특히 단순노무직 종사율은 모자가구의 경우 1/3정도로써 유배우가구의 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음은 生活水準을 간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로써 自家所有率과 月平均 生活費, 그리고 生活自立率을 비교해 본 결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自家所有率은 유배우가구의 경우 59%인데 비해 모자가구는 48% 정도이며, 月平均 生活費는 유배우가구가 75만원인데 비해 모자가구는 50만원, 그리고 다른 친족이나 정부의 지원없이 가족원의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生活自立率은 유배우가구가 93%인데 비해 모자가구는 6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모자가구는 유배우가구보다 교육수준과 취업률에 있어 낮은 율을 보이고 있고, 취업중인 경우에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빈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 自家所有率, 月平均 生活費 및 生活自立率에 있어서도 유배우가구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모자가구에 있어 經濟的 貧困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生計問題

생계문제는 家計를 책임지던 배우자를 상실함으로써 편모가 겪게 되는 根本的인 문제로서 이들 가구의 경우 편모 자신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 여성의 취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고 편모의 취업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雇傭機會의 不平等과 낮은 教育水準, 專門技術이나 知識不足으로 인한 非公式部門에의 就業 등으로 이들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큰

것으로 보이며, 어린 자녀를 두었을 경우 자녀양육과 취업활동을 겸하기도 쉽지 않다.

이들 모자가구의 生計維持 方法은 가족의 수입이나 재산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自立家口의 경우가 67%에 이르나 부모·형제·친척 등의 지원이나 정부지원을 받는 依存家口도 33%에 이른다. 生活費의 充足度는 自立家口의 경우 53%, 또 依存家口의 경우는 75%가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孔世權 外, 1995:25~27)하고 있어 이들 가구의 대부분은 생계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6〉 母子家口의 生活自立 與否

(단위: %)

자립여부	전국	도시	농촌
생활자립	67.1	73.3	50.6
생활의존	32.9	26.7	49.4
전체	(641)	(465)	(176)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表 7〉 母子家口의 生活自立 與否別 生活費 充分與否

(단위: %)

생활비 충분여부	자립	의존
충분한 편	13.6	4.4
별 지장없음	33.4	20.9
부족한 편	53.0	74.7
전체	(430)	(211)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혼가족의 생활실태조사

따라서 政府는 低所得 母子家口를 중심으로 생계보호는 물론 永久賃貸住宅 優先支援, 生業資金 融資,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 子女養育 및 教育支援 등 多角的인 對策을 강구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중 일정량을 모자가구에 우선 공급하며, 저소득 모자가구

의 生業基盤 造成 및 自立·自活을 위해서 一定額(약 1,000만원 이내)의 生業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하는 技術訓練에 무료로 參與할 機會를 附與함은 물론 훈련기간중 훈련수당과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하며, 취업안내를 통해 희망자에게 就業을 斡旋한다. 이 외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兒童養育費를 支援하며,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는 授業料와 入學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은 저소득 모자가구의 根本的인 生計問題에 대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3. 役割過重

편모들의 役割過重은 자녀양육과 교육지원은 물론 家事와 就業을 겸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문제로써, 身體的인 負擔 외에 經濟的 貧困과 家計所得의 不安定으로 인한 緊張과 함께 偏母의 心理的 스트레스를 誘發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취업 편모의 경우 취업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總 勞動時間(1일)은 15시간 정도이며, 이 중 대부분의 시간은 취업활동에 투입되어 가사노동은 주로 아침 일찍 또는 밤 늦은 시간에 이루어진다(金貞子 外, 1988:77). 또한 이에 더하여 편모는 혼자서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한 역할까지 겸해야 하는 負擔을 안고 있다. 물론 자녀양육과 교육지원은 어떠한 가정에서나 主要問題이기는 하나 특히 편모 혼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偏父母 슬하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兩父母 슬하에서 성장하는 자녀와 비교할 때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

5) 永久賃貸住宅 優先 供給對象은 그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모자가구로써 保健福祉部 長官이 정하는 보호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月所得이 972천원 미만인 저소득 모자가구이며, 生業資金 融資對象은 생활등급 7등급 이하로써 근로능력과 자활자립 의지가 뚜렷하며, 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이다. 또한 兒童養育費 支援對象은 생활등급 7등급 이하 모자가구의 6세 이하 아동으로 1일 분유 80g에 해당하는 양육비(400원)를 지원대상 아동의 가구를 관할하는 市·郡·區廳長의 책임하에 대상아동의 母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지만 사회동념상 相對的인 壓迫感, 劣等感, 喪失感, 抵抗感 그리고 情緒的 不安感, 心理的 葛藤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의 사랑과 統制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어머니마저 生計維持를 위한 취업 때문에 자녀를 충분히 보살필 수 없는 상황으로 脫線이나 非行 靑少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役割過重의 문제는 어린 자녀를 두고 취업을 하는 편모의 경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약 42%는 일을 하는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類推할 수 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중 자신이나 자녀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싶지만 相議할 사람이 없는 점도 주요 문제이다. 일부 자료에서 편모가 자녀문제를 의논하고 싶어도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경우는 66.3%에 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자료는 자녀문제를 의논할 대상이 없어서 ‘혼자 해결한다’는 경우가 38%에 이르러 자녀문제는 양육비나 교육비 지원만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상담서비스(실제 專門家에 의한 相談은 0.9%에 불과함)도 주요시 된다(金貞子 外, 1988:84; 高順伊, 1990:42). 이처럼 편모들이 家事와 生計를 위한 就業 및 養育 등을 견해야 한다는 점은 결국 肉體的·精神的 過勞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편모는 건강상의 문제⁷⁾를 갖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질병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편모들의 役割過重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러한 점은 家族特性 내지 個人與件에 따라서 다양성을 내포하여 이를 위한 지원형태도 획일화 될 수 없다. 여기서 役割支援은 자녀를 돌보아 주거나, 자녀들의 학습을 지도하거나, 가사중 특별한 일을 돕거나, 가족이 아플 경우 간병을 하는 등 지속적인 일이 아니라도 편모들이 원하는 경우에 이를 도와줄 수 있

6) 母子家族 그 자체가 靑少年의 非行이나 脫線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욕구불만, 심리적 고독감, 애정결핍 등이 모자가구 자녀의 行動을 非行으로 誘引하는 要因이 된다는 의미이다(金貞子 外, 『偏父母家族의 支援方案에 관한 基礎研究』, 1984:145).

7) 韓國女性開發院 資料에 의하면 偏母중 약 60% 이상이 慢性疾患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金貞子 外, 『低所得層 母子家族에 관한 研究』, 1988, p.94).

는 支援體系를 의미한다. 이는 산업화와 함께 個人主義 意識의 鼓吹로 傳統的 相扶相助 意識의 弱화는 물론 家族關係마저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층 더 절실히 질 수 있다. 즉, 남편과 이별하기 전에 비해 가족 관계는 물론 친족관계, 친구관계마저 소원해져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저소득층 모자가구에 대한 역할지원으로는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국·공립 保育施設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녀의 학습지도, 그리고 社會福祉館 附設의 在家福祉奉仕센터의 자원봉사자를 통한 家事支援 서비스 등이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도이다.

4. 情緒問題

편모들의 情緒問題는 주로 혼자된 외로움, 쓸쓸함, 비통함, 소외감 등과 혼자서 자녀를 돌보며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두려움, 강박감, 갈등감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배우자와의 離別原因에 따라서, 또 生活週期(여기서 생활주기는 이별직후의 적응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취업기, 자녀출가 및 출가후 독신기 등)에 따라서 다양하다. 즉, 배우자와의 이별 당시는 ‘絶望感’을 느끼는 경우(45.1%)가 많고, 이별 직후에는 ‘強迫感’을, 또 적응후에는 ‘疏外感’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해 혼원인에 따라서 사별의 경우는 ‘절망’을, 이혼 및 별거의 경우에는 ‘분노’를 경험하는 경향이 많다. 이처럼 편모들은 유배우 부인과 달리 배우자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처한 환경조건과 관련 생활문제, 자녀문제, 친족관계, 자신문제 등으로 情緒的 어려움에 直面하게 된다(金貞子外, 1984:67~68).

편모가 평상시 느끼는 緊張感 및 壓迫感을 알아보기 위해 ‘공연히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할 때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약 87%가 ‘가끔’ 또는 ‘자주’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解婚原因別로는 사별 보다는 이혼과 별거의 경우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은 생

활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滿足도와 負的 關係를 나타내고 있어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여부가 浬모의 情緒的 安定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金貞子 外, 1988:102~103). 이러한 점에서 모자가구의 生活滿足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비율(16.7%)보다 불만족인 비율(38.7%)이 더 높고, 특히 有配偶家口와 비교할 때(만족: 43.7%, 불만족: 13.4%) 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 모자가구의 생활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유배우가구 보다 모자가구의 정서적 문제가 많을 것으로 類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화나 속상함을 가라 앉히는 방법으로 약 1/2정도의 浬모가 '혼자 참아낸다'고 하고 있으며, 그 외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문제 발생시 의논할 대상이 없다는 경우도 약 47%에 이르고 있어 情緒的 問題에 대한 支援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表 8〉 母子家口와 有配偶家口の 生活滿足度 比較

(단위: %)

생활만족도	모자가구			유배우가구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만족하는 浬	16.7	17.9	13.6	43.7	43.8	43.4
보통인 浬	44.6	46.2	40.3	42.8	43.0	42.4
불만인 浬	38.7	35.9	46.0	13.4	13.2	14.2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결손가족의 생활실태조사

浬모들의 情緒問題는 생활의 어려움과 有機的인 關係를 지닌다. Holmes 와 Rahe(1967)는 심리적 모델을 설명하는 가운데 인간이 일생 중 경험하게 되는 42가지 사건중 社會的 再適應(social readjustment)이 가장 힘든 일이 配偶者 死亡이고, 다음은 離婚 및 別居의 順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浬모들이 1차적으로 경험한 情緒的 不安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안 요건을 안고서 남편을 잃은 가운데 생활을 책임져야 하고,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자식을 키우는 점 등은 불안을 加重시키는 일

이 아닐 수 없다. 편모들의 생활은 가구에 따라서 차이가 많지만 物質的 貧困이나 役割의 過重이 情緒的 不安으로 귀결되고, 특히 子女養育은 또 다른 精神的 負擔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個別的이고 分離된 문제가 아니라 相互 聯關性을 갖고 나타나는 것으로 편모의 어려움을 加重시키고 있다. 또한 편모의 情緒的 問題는 生을 肯定的으로 수용하느냐 또는 否定的으로 수용하느냐를 결정하는 主要要因이 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편모가족에게 발생하는 問題解決에 중요한 要因이 된다는 점에서 편모의 정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支援은 要求된다고 하겠다.

이들 모자가구 偏母의 情緒的 欲求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으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相談서비스 提供을 들 수 있다. 편모를 포함한 부녀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로는 女性會館(婦女福祉館), 女性福祉相談所와 사회복지법인인 (綜合)社會福祉館 등이 있으며, 이 외 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在家福祉奉仕센터에서도 低所得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회관이나 여성복지상담소 등은 상담서비스 보다는 취미나 敎養敎育 및 技術敎育에 치중되어 있고, 相談內容에 있어서도 시설입소나 치료의뢰 또는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이나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自願奉仕者에 의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在家福祉奉仕센터의 경우 老人이나 障礙人을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자가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V. 福祉接近

모자가구의 生活問題는 複合性을 內包한다. 이는 남편을 잃은 가운데 겪게 되는 경제적 빈곤과 독립된 생활에서 남편의 몫까지 견뎌야 하는

역할의 과중이 결과적으로 정신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자가구를 위한 복지는 대개 物質的 側面에 치중되고, 肉體的 그리고 精神的 측면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는 자원한계에 의한 영향도 없지 않지만 역할경감 및 정서안정 등이 내용의 多樣性에서 接近이 쉽지 않다는 점도 排除될 수 없다.

따라서 모자가구를 위한 福祉接近은 먼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초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의 接近戰略과 代案準備가 요구된다. 한 예로 모자가구의 자녀교육이 문제라면 이는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측면인지, 뒷바라지와 같은 역할의 측면인지, 아니면 탈선행동과 같은 정신적 측면인지 등을 검토하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는지의 접근방법은 물론 대안강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자가구를 위한 복지접근은 물질적 지원만으로 국한될 수 없고 役割支援과 情緒安定 등 多樣化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모자가구를 위한 복지접근은 저소득층 중심의 生活保護(생계지원, 주택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 및 교육지원)와 無依託 대상의 施設保護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제한된 복지자원으로 생활보호에 우선하는 救護福祉(물질지원을 통한 생계보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자립생활 조성을 위한 역할지원, 능력개발, 기반조성 및 정서안정 등의 機能福祉 측면은 미흡한 상태라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자가구를 위한 복지접근은 어떠한 측면이 強化되어야 할 것인가? 향후 모자가구를 위한 福祉接近은 다음 네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모자가구 편모의 役割支援을 위한 在家福祉서비스의 活性化 및 對象擴大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의 재가 복지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재가노인 및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서비스 및 결연서비스 등을 活性化하고, 그 對象도 모자가구까지 擴大하여 제공토록 한다.

둘째, 모자가구 편모의 情緒的 支援을 위한 綜合相談窓口를 設置하도

록 한다. 모자가구의 경제적 빈곤문제와 역할과중은 편모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편모의 정서적 불안은 자녀의 행동이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相互作用을 한다. 또한 한 개인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전체의 문제로써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있는 家族體系內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症狀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전체를 한 단위로 하는 家族福祉的 次元에서의 相談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사회내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綜合)社會福祉館을 家族問題 綜合相談窓口로 하고, 각 문제를 진단·분류하여 일차적인 서비스는 (綜合)社會福祉館에서 제공토록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각 전문시설로 連繫·依賴하여 해당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간의 連繫·依賴體系를 構築할 필요가 있다. 셋째, 同質의 경험과 문제를 가진 모자가구간의 自助그룹을 형성하여 相互 社會的·情緒的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비슷한 상황에 대한 경험으로 상호 情報를 交換하여 問題解決 方法을 찾도록 한다. 이러한 모임구성은 (綜合)社會福祉館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임구성 및 지도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은 社會福祉士가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모자가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豫防的 次元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결혼의 안정성에 대한 婚前敎育과 함께 민간기관 등을 이용한 生活週期別 夫婦敎育 등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I. 要約 및 結論

母子家口는 配偶者와의 死別, 離婚, 別居 등으로 홀로 된 母가 미혼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이들 가구의 形成原因은 전통사회와 비교할 때 變化樣相을 보이고 있다. 즉, 傳統社會는 생존조건 열악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과 엄격한 가족제도에 의한 離婚의 統制로 사별에 의한 경우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大家族制度로 이들을 가족이 포용하면서 社會的 露出이 은폐되었다. 그러나 現代社會는 生存條件의 改善으로 사망률이 감소한 대신 이혼 및 별거의 증가와 함께 核家族化 性向에서 이들 모자가구도 獨立된 가구를 이루는 사회적 노출로 증가하고 있다.

모자가구는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유배우가구와 비교할 때 배우자가 없다는 점에서 經濟貧困, 役割過重 및 情緒的 問題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자가구의 가족규모, 개인특성 및 경제수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지만 대개 肉體的, 物質的, 精神的 次元으로 대별되며, 또 이들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複合的 性格을 지닌다. 따라서 모자가구를 위한 福祉接近은 생계보호 내지 교육비 보조 등의 物質的 支援에 불과해서 役割支援 및 情緒安定을 위한 접근이 並行되어야 한다.

그러나 政府의 모자가구를 위한 福祉接近은 低所得層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우선분양, 생업자금 융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 주로 經濟支援에 치중되고, 일부 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相談도 대개 斷片的인 점에 국한되어 대상자 個人이나 家族의 역동적 문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모자가구의 생활문제는 남편이 없는 가운데 경제적 빈곤과 역할과중이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또한 편모의 정서적 불안은 자녀의 행동이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相互作用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서안정과 역할경감은 물질충족에 뒤질 수 없는 주요한 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모자가구를 위한 福祉接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이 並行되어야 한다.

첫째, 모자가구 편모의 役割支援을 위해 현재 (綜合)社會福祉館 부설의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서비스 및 결연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고, 그 대상도 모자가구까지 확대하여 제공토록 한다. 둘째, 모자가구 편모의 情緒的 支援을 위해서는 현재 지역사회내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綜合)社會福祉館을 家族問題 綜合相談窓口로 하여 일차적인 서비스는 (綜合)

社會福祉館에서 제공토록 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각 전문시설로 連繫·依賴토록 한다. 셋째, 同質의 경험과 문제를 가진 모자가구간의 自助그룹을 형성하여 相互 社會的·情緒的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모자가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결혼의 안정성에 대한 婚前敎育과 함께 민간기관 등을 이용한 生活週期別 夫婦敎育 등을 실시토록 한다. 이는 최근에 이룰수록 모자가구의 增加가 離婚에 의해 주도되고, 離婚은 夫婦間 性格差異에 의한 불화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어 結婚의 安定性과 夫婦關係의 再定立을 위한 婚前敎育 및 夫婦敎育이 主要時 됨을 의미한다.

參 考 文 獻

- 孔世權·曹愛姐, 『偏父母 家口의 生活實態와 福祉對策』,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
- 孔世權·曹愛姐·許美映, 『家族缺損의 類型別 特徵과 家族政策의 接近方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
- 高順伊, 『都市 貧困 母子家庭 實態와 福祉에 관한 研究』, 1990.
- 김순옥, 「대안으로서의 이혼」, 『가족과 혼인문화』, 1996년도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족학회·한국학술진흥재단, 1996.
- 김영석,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1995.
- 김인숙,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와 가족복지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제19호, 1994.
- 金貞子 外, 『偏父母家族의 支援方案에 관한 基礎研究』, 韓國女性開發院, 1984.
- _____, 『低所得層 母子家族에 관한 研究』, 韓國女性開發院, 1988.
- 魯仁喆 外, 『低所得層 實態變化와 政策課題 - 自活支援을 中心으로』,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

- 保健福祉部, 『保健社會統計年報』, 1995.
- _____, 『婦女福祉事業指針』, 1996.
- _____, 『婦女福祉施設現況』, 1996.
- 白景姬, 『貧困 母子家族 福祉政策 樹立에 관한 研究』, 1987.
- 徐文姬, 『婦人の 離婚과 再婚에 影響을 미치는 社會·人口學的 및 結婚關聯 要因』, 『保健社會論集』, 제13권 제2호,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3, pp.1~19.
- _____, 『結婚生活이 婦人健康에 미치는 影響』, 『保健社會論集』, 제14권 제1호,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pp.111~125.
- 李廷鎬, 『民間社會福祉活動의 活性化 方案研究』, 『社會福祉研究論文集』, 제16집, 保健社會部·國立社會福祉研修院, 1993, pp.39~79.
- 조남범 외, 『1994년도 재가복지봉사센터 현황조사 보고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5.
- 趙熙仙, 『母子家族과 夫婦家族의 家族스트레스에 관한 比較研究』, 1991.
- _____, 『偏父母 家庭福祉의 實際와 向上方案』,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 한국가족문제 세미나, 서울특별시·한국가족관계학회, 1996.
- 최경석,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의 개혁과제와 방향』, 『사회정책연구』, 제16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4, pp.212~249.
- 統計廳, 『人口動態統計年報』, 1989, 1994.
- _____, 『1992年 死亡原因統計年報』, 1993.
- Holmes, Thomas H., Rahe, Richard 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11, 1967, pp.213~218.

Summary

Living State of and Welfare Policy Measures for Mother and Children Households

Aejeo Cho

In this study, the "mother and children household" is defined as any household where a single mother has been left alone due to widowhood, divorce, or separation and is solely responsible for supporting her unmarried children. The formation of these households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death of the husband, but divorce and separ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more relevant factors these days. With the trend of the nuclear family, most single mothers have ha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ivelihood for their families after losing their husbands and, thus, have had to face several problems including of economic destitution, fostering and overseeing the educational affairs of the children, the burden of playing dual roles, as well as emotional and personal difficulties.

The government has recently been placing emphasis on livelihood protection and physical support, such as the allocation of permanently rentable housing, loans to small businesses, educational expense aid and job placement for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the government has disregarded the aspects of role-playing and the need for emotional stability within these households. This study has tried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the mother and children households from the emotional and personal perspectives, after

reviewing thoroughly the real state of the mother and children households.

First, as a policy measure for supporting the role-playing of single mothers, domiciliary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or these households by the domiciliary services centers in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Second, as measures for supporting the emotional aspects of the single mothers, counseling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which has provided the integral counseling services for families in the community till the present. Third, the mother and children households with similar problems should meet and create a small peer group so that they can help each other through the exchange of emotion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Fourth, preventive education on marriage and family should be provided for controlling the formation of the mother and children households.